

2001. 12.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12.1	12. 1	12. 22	12. 22	총무과장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1.12.17	12. 17	"	"	기획감사과장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	"	세정과장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	회계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구와 세대가 증가된 지역을 적정규모의 리통반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 통증설 : 3개통

- 해당지역 : 칠금동 금능지구내 세영체시빌아파트
- 중설내역 : 칠금동 제33통, 제34통, 제35통

○ 반증설 : 12개반

- 칠금동 제33통 : 4개반(82세대)
- 칠금동 제34통 : 4개반(115세대)
- 칠금동 제35통 : 4개반(115세대)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금년말 마무리 되고 우리시의 분배소가 폐쇄됨에 따라
- 경보요원 정원 2명을 감축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본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2조증 정원의 총수는 “1,140명”에서 “1,138명”으로 2명을 감축 같은조 제1호증 집행기관의 정원 “1,124명”을 “1,122명”으로 함.

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문화재청에서 등록여부를 심의하여 결정된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통하여 귀중한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통하여 문화재관리 및 보존에 기여 ·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공장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조례안 제23조 제10항)
- 재산평정가격의 5% ⇒ 1%이상
-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함(조례안 제26조 제2항)
-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등을 규정함(조례안 제26조의2)
- 사용료·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지한 기간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함(조례안 제29조 제1항)
- 대부료의 연체료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함(조례안 제29조 제2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함(조례안 제2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와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고 하는 것임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의 마무리(2001. 12월)를 앞두고 분배소 축소에 따른 인력 재배치등 새로운 경보운영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어 민방위 경보요원의 정원조정 지침이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정원조정기준은 경보단말기 5대이상 보유한 시군에 1명씩 조정 배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현 충주시의 경보단말기는 6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 이에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경보요원이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으로 감축하여 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의 신설에 따른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2001. 7. 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시·군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충북도에서 시달되어
- 각 시·군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라는 내용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공공시설은 위탁하고자 할 때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하여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공유재산심의 사항중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이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종전에는 제한규정 내에서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이에 제한 규정을 삭제 완화하였음.
-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 수도권내 공장이 지방이전이나 종업원 100명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 충주시 지역내에서 조달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때에도 대부료의 요율을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였으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질의 : 관련 조례에 통반설치 기준에는 20~30세대가 1개반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1반은 15세대 밖에 안되므로 기준에 위반되지 않은지?
- 답변 :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취락형태가 1개반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서 단서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였음.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질의 : 분배소 직원의 직급은?

○답변 : 통신직 7급 1명과 기능통신직 2명임.

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질의 : 충주시의 감면 대상 문화재는?

○답변 : 현재 우리시는 등록문화재가 없는 상태임.

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질의 : 제27조 4항은 삭제되는 것인지?

○답변 : 삭제하는 것임.

5. 심사결과

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라.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1부.